

 신안산대학교	계절학기에 관한 운영규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규정번호</td><td style="padding: 2px;">2-4-4</td></tr> <tr> <td style="padding: 2px;">제정일자</td><td style="padding: 2px;">2016.02.05</td></tr> <tr> <td style="padding: 2px;">개정일자</td><td style="padding: 2px;">2024.3.20.</td></tr> <tr> <td style="padding: 2px;">책임부서/팀·계</td><td style="padding: 2px;">교무처</td></tr> </table>	규정번호	2-4-4	제정일자	2016.02.05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규정번호	2-4-4									
제정일자	2016.02.05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제1조(정의)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외에 방학 중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정규학기 수업이며 재학생 중 계절학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업을 말한다.

제2조(개설시기) 계절학기는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한다.

제3조(수업기간 및 학점)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2019.11.14. 개정>

제4조(수강신청) ① 계절학기 수강희망자는 소정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교과목은 현장실습업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현장실습신청서로 대체 할 수 있다.<2015.3.13. 신설>

제5조(개설교과목) ① 계절학기의 개설교과목은 본대학 정규학기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에는 수강신청인원이 교양과목은 20명이상, 전공과목은 15명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 한다.

③ 부득이하게 총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설할 수 있다.<2015.3.13., 2019.11.14 개정>

제6조(수강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절학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전일제 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교과목 과락 자.
2. 당해 학기 등록자종 학점취득을 위한 추가 신청자.
3. 교육과정 개편으로 소속학과 교육과정에서 폐강 또는 학기 조정이 된 과목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4. 방학 중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
5. 기타 총장이 승인한 자

<2015.3.13. 신설>

<2015.3.13. 신설>

제7조(취득학점)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6학점(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2014.09.16. 개정>

제8조(성적평가)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별도 학기의 성적으로 처리하며, 장학금지급 및 학사경고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전체성적의 평점 평균에는 산입한다.

제9조(수강료) 계절학기의 수강신청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제외한다.

<2015.3.13. 개정>

제10조(공지) 교무처은 계절학기의 개설교과목, 수강기간, 신청절차, 수강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계절학기 시작 2주전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08.20., 2024.3.20.>

부 칙

01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01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01 규정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01 규정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0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0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0이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0이 규정은 202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